# 정보산업대학원 학칙

제정: 2000.12.11. 26차 개정: 2024.6.5.

# 제1장 총칙

- 제1조 (목적) 본 대학원은 공학 및 인문.사회계열에 관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하고 연구하는 동시에 기술인의 지도적 인격과 창의적 개발능력을 함양함으로써, 인류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1.4.1.)
- 제2조 (명칭) 본 대학원은 한라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(이하 "본 대학원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- **제3조 (과정)**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(이하 "석사과정"이라 칭한다)과 연구과정을 둔다.

#### 제2장 정원 및 전공

제4조 (전공 및 정원) ① 본 대학원에 설치하는 전공 및 정원은 <별표 1>과 같다. 다만, 연구과정은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.

(개정 2010.6.14., 2011.4.1., 2013.3.13., 2015.6.17., 2016.2.3., 2022.8.24.)

-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, 편입학,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 (신설 2010.6.14.)
- 1.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
- 2. 학·군 제휴 협약에 따른 군 위탁생
- 3.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·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
**제5조** (삭제 2011.4.1.)

**제6조 (수업방법)** 수업방법은 교과목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병행할 수 있으며 강의는 원격수업, 팀티칭수업, 특강 등으로, 실습은 현장실습을 시행할 수 있다. (개정 2024.6.5.)

## 제3장 입학

- 제7조 (입학시기)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- **제8조 (입학자격)**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.
  - 1.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

- 2.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
- 제9조 (입학전형방법) ① 본 대학원은 학기별 신입생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하되, 당해 연도의 모집요강에 의하여 시행한다. (개정 2007.11.1.)
  - ② (삭제 2010.6.14.)
- 제10조 (지원절차)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- 1. 입학지원서
  - 2.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
  - 3. 출신 대학의 학업성적증명서
  - 4. 사진 3매
- 제11조 (재입학) ① 제적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제적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. (개정 2011.4.1.)
  - ②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1.4.1.)
- 제12조 (편입학) 동일 또는 유사 전공 출신자로 타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한 자를 본 대학원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(개정 2011.4.1.)
- 제13조 (입학제한)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(조교 제외)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. 다만, 학문 연구상 부득이할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 동안은 휴직하여야 한다.
- 제14조 (비동계지원) 대학원 전공과 전공이 다른 자에게도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.

# 제4장 등록 및 학적

- 제15조 (등록) 원생은 매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제16조 (등록금) 학생은 등록 시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이미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납입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단,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제17조 (휴학) ①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휴학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통산하여 2년(4학기)를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 2008.10.6.)
  - ② 임신·출산·육아를 위한 휴학기간(2년)은 ①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(신설 2018.3.21.)
- 제18조 (복학) 복학은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제19조 (제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.
  - 1.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
  - 2.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  - 3. 학업부실, 성행불량 또는 기타의 이유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 계속의 가망이 없다고 판정한 자
- 제20조 (자퇴)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제5장 수업, 학점 및 수료

- **제21조 (전과 및 전공변경)** ① 전과(전공변경 포함)는 1개 학기 경과 후 제2학기 개강 10일 이내 또는 제3학기 개강 10일 이내 중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 (개정 2012.12.12.)
  - ② 대학원의 학과 또는 전공의 통폐합이 있을 경우 학생의 전과(전공변경 포함)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2.12.12.)
  - ③ 전과(전공변경 포함)을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2.12.12.)
  - 1. 신ㆍ구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이 확인된 전공변경 신청서
  - 2. 이수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
- 제22조 (수업 및 재학연한)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5학기로 한다.
  -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단 2학기로 하고, 재학연한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  -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는다.
- 제23조 (이수과목) 본 대학원 학생이 매학기 이수하여야 할 과목의 이수학점은 별도 교육과정에 의한다.
- 제24조 (이수학점) ① 석사학위의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24학점으로 한다. 최저 학점 이외에 학위 논문을 작성할 경우(논문과정)는 논문지도 2학점을, 학위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(비논문 과정)는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12.12., 2018.11.13.)
  - ② 매학기 2학점 이상 9학점 이하를 수강하여야 한다. (개정 2011.4.1.)
  - ③ 연구과정 원생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.
- 제25조 (학점인정) ①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시험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. ② 군 위탁생이 군교육기관(국방대학원, 국방참모대학, 육군대학 등)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본 대학원 개설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(신설 2009.11.1.)
  - ③ 학·군 제휴에 의하여 입학한 경우에는 "학·군 제휴 협약"에 따른다. (신설 2009.11.1)
- 제26조 (수료) ① 본 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하여는 제22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이수하고, 제24조에서 규정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, 학위논문 제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.
  - ② 전항의 요건을 충족한 원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할 수 있으며,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해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  - ③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는 수료 후 5년 이내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. (개정 2012.12.12., 2018.3.21.)
  - ④ 석사과정 수료 5년 이상 경과 시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. (개정 2021.6.8.)

## 제6장 학위수여

- 제27조 (학위논문 제출자격)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원 소정의 석사과정 이수 평점평균 성적이 3.0급 이상으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논문지도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로서 학위논문 제출 자격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 (개정 2002.9.12,, 2011.4.1.)
- **제28조 (종합시험)** ① 석사학위과정 원생으로서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(개정 2011.4.1.)
  - 1. 소정의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.
  - 2. 취득학점의 평점 평균 성적이 3.0급 이상인 자.
  - ② 종합시험은 전공과목 및 외국어 과목으로 한다. 전공과목은 3과목 이상으로 하며, 외국어 과목은 영어로 한다.
  - ③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 (신설 2011.4.1.)
- 제29조 (논문심사) ① 논문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부심 2인의 교수 또는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하는 심사위원이 행한다. (개정 2002.9.12.)
  - ② 주심은 심사위원으로 심사의 진행을 주재한다.
  - ③ 석사학위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.
  - ④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로서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**제30조 (학위수여)** ①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과정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. (개정 2011.4.1.)
  - 1.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.
  - 2. 취득학점의 평점 평균 성적이 3.0 이상인 자
  - 3. 소정의 종합시험 및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. 단, 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3학기 중 지도교수 면담 후 4학기부터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 성적이 3.0 이상인 자. 다만, 6학점 추가 이수 시에는 과목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  - ②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대상자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자격을 사정한다. (개정 2011.4.1.)
  - ③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한 자에게는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. 부여되는 석사학위종별은 <별표 2>와 같다. (개정 2011.4.1., 2016.2.3.)

# 제7장 조직

- 제31조 (직제) 본 대학원에는 원장과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.
- **제32조 (전공별 주임교수)** ① 각 전공별로 학부(과)장을 주임교수로 한다. (개정 2013.7.3.)
  - ② 주임교수는 그 전공분야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학생의 이수과목의 지정, 기타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.
- 제33조 (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) ①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(개정 2002.9.12.)

- ② 위원회는 대학원장과 개설 전공의 학부(과)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 (개정 2013.7.3.)
- ③ (삭제 2013.7.3.)

**제34조 (위원회 심의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개정 2002.9.12.)

- ① 학생의 입학, 진학과 과정의 수료 및 인정에 관한 사항
- ② 학부와 전공의 설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- ③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- ④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 학위, 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⑥ 전문학위의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
- ⑦ 장학금 및 전공영역에 관한 사항
- ⑧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[제목개정 2002.9.12.]

제35조 (위원회 회의 및 의결방법)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제목개정 2002.9.12.]

제36조 (임기) 본 전공별 주임교수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학부(과)장의 임기로 한다. (개정 2013.7.3.)

# 제8장 상벌

**제37조 (장학금지급)**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탁월한 재질과 성품을 갖추고, 학업성적이 우수하며, 대학원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 제9장 공개강좌

- 제38조 (공개강좌) ①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  - ② 공개강좌는 직무, 교양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- ③ 공개강좌의 과목, 기간, 수강정원,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마다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 제10장 학칙개정

- 제39조 (개정안 공고) ① 학칙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학원에서 개정안을 입안한다. (개정 2024.6.5.)
  - ② 총장은 학칙개정안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  - ③ 대학 및 대학원 구성원은 공고된 학칙개정안에 대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서면으로 의견

- 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의 의견 제출에 따른 기간, 제출처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개정안 공고 시 함께 공고한다. [본조신설 2014.7.17.]
- ⑤ 사전 공고 종료 후 개정안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 (신설 2024.6.5.)
- 제40조 (심의 및 공포) 사전 공고하여 조정된 개정안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이를 총장이 공포한다. (개정 2024.6.5.)
- 제41조 (보고) 총장은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께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학생정원
  - 2. 수업연한, 학기와 수업일수
  - 3. 입학, 재입학, 편입학, 휴학, 복학, 전과, 자퇴, 제적, 유급, 수료, 졸업, 징계
  - 4. 교과의 이수단위, 학점인정
  - 5. 장학금 지급과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사항 [본조신설 2014.7.17.]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8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 제28조(종합시험) 및 제30조(학위수여) ①의 3항 중 "단, 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3학기 중 지도교수 면담 후 4학기부터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하고 평점 평균 성적이 3.0 이상인 자. 다만, 6학점 추가 이수 시에는 과목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"라는 2011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- 2. (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변경학칙 시행당시 "테크노경영학전공"이 "경영학전공"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소속 재적생은
  - ① 2011년 8월 졸업(수료)자는 변경 전 전공으로 졸업(수료)한다.
  - ② 2012학년도 이후 졸업(수료) 대상자부터 변경된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. 다만, 본인의 희망이 있을 경우 변경 전 전공으로 졸업(수료)할 수 있다.
- 3. (전공명칭 변경) "레저관광경영학전공"을 "관광경영학전공"으로 명칭을 변경하며,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 (개정 2016.2.3.)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1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4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학칙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(신설 2010.6.14.)(개정 2016.2.3., 2018.11.13., 2021.6.8., 2022.8.24., 2023.11.28., 2024.5.25.)

# 전공 및 정원

대 학 명	과 정	전 공	정 원	비 고
정보산업 대학원	석 사	기계・자동차공학전공	21명	
		전기・전자공학전공		
		컴퓨터공학전공		
		정보통신공학전공		
		건축공학전공		
		토목공학전공		
		경영학전공		
		사회복지학전공		
		경찰행정학전공		
		뷰티디자인학전공		
		관광경영학전공		
		통일경제학전공		
		문화관광콘텐츠전공		
		AI정보보안전공		
		미래자동차공학전공		

<별표 2>(신설 2011.4.1.)(개정 2016.2.3., 2018.11.13., 2021.6.8., 2023.11.28., 2024.5.25.)

# 수 여 학 위

과 정	계 열	전 공	수여학위	
석사학위	공학계열	기계・자동차공학전공	공학석사	
		전기・전자공학전공		
		컴퓨터공학전공		
		정보통신공학전공		
		건축공학전공		
		토목공학전공		
		Al정보보안전공		
		미래자동차공학전공		
	인문 · 사회계열	경영학전공	경영학석사	
		문화관광콘텐츠전공		
		사회복지학전공	사회복지학석사	
		경찰행정학전공	경찰학석사	
		관광경영학전공	관광학석사	
		통일경제학전공	통일경제학석사	
	예체능계열	뷰티디자인학전공	미용예술학석사	